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개정 ('25.8.7 시행)에 따라,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사항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가. 설치검사 대상과 정기검사 시기 명확화 및 운반차량의 정기검사 주기 등 규정
- 나. 위험도·사업장 구분(1군·2군) 변경 시 안전진단 주기 변경 적용 기준 등 명확화
- 다. 검사·안전진단 신청 및 결과 처리를 시설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여 검사·안전진단 주기 및 이력 관리 일원화
- 라. 취급시설 및 사외배관 등 용어정의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 제24조에 따라”를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로, ““검사“라 한다)의 내용 및 방법,”을 ““검사“라 한다)의 내용·방법·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으로, “정함”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시설을”을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건축물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8호) 중 ““저장·보관시설”이란”을 ““보관시설”이란”으로, “저장·보관하는 시설”을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건축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중전의 제9호) 중 ““차량운송시설”이란”을 ““차량 운송시설”이란”으로, “부속설비를 갖춘 시설”을 “부속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중전의 제10호) 중 ““차량운반시설”이란”을 ““차량 운반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중전의 제11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12호) 중 “시설을”을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건축물 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4. “설비”란 탭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및 가열로류 등 장치류와,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등 기계류 및 배관, 계측기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5.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관(튜브, 덕트 등)

· 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기록 등을 하는 계측·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7. “유해화학물질설비”란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 보관 및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10.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유해화학물질을 단위공장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 등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건축물 등을 말한다.

15. “안전진단”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

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등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20.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21.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 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22.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란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3.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란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4. “사고시나리오”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 및 안전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내·외 저장시설

3. 보관시설

5. 차량 운반시설

6. 차량 운송시설

④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사업장 단위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으로 운영단위가 구분되는 등의 사유로 신청자와 검사기관간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위공장 단위로 신청과 처리를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4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는 제외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을 “추가된”으로, “유해화학물질 품목의”를 “유해화학물질의”

로, “동일한”을 “동일한(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에 적용될 기술기준 등에 동등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며, 검사결과서는 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변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취급시설이 변경(유해화학물질설비 및 건물·건축물 등의 신설·증설·위치변경·교체·개조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부속설비를 기존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사양·구조로 교체하는 등 정비·수리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2.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라목 및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거나, 제3호 나목, 다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3.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증가하여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⑤ 법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을 말하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한다.

1. 기계 및 장치에 내장(內藏)되어 정상적인 사용과정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이 없는 경우
2.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정상적인 사용과정(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이 없는 경우
3. 우편 또는 택배 차량으로서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견본품이 규칙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이 되지 않도록 포장된 경우

제4조의2제1항 중 “동일시설(반도체)”를 “동일시설[반도체]”로, “가스공급 시설로 한정한다)”를 “같은 업종의 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한다)”로,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 시 해당시설이 별표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시 해당 시설이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시설”을 “취급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이 기준”을 “취급시설이 기준”으로, “일치하는 지”를 “일치하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취급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 설계 시”를 “취급시설 설계시”로, “시설이”를 “취급시설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한다.)로부터 매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년)”을 “한다)로부터 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제2호 중 “시설”을 “취급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존 장외영향평가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및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정기검사일(설치검사를 받은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변경된 정기검사 시기를 적용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단위공장을 보유한 경우로서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단위공장 중 최초 검사를 받은 단위공장의 해당 연도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지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⑧ 중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를 정할 때에는 규칙 부칙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재통보한 취급시설의 위험도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에 따라 1군 또는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다수의 검사시설을 보유하여 각 검사시설마다 정기검사 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검사시설 중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의 정기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의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주기에 따른 정기검사 시행일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위험도 및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기(직전 정기검사주기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⑩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 이내의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화 수소, 황산, 브롬화 수소 및 플루오르화 수소를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 1년
2. 유해화학물질 중 금속부식성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을 운송·운반하는

차량 운송시설 및 차량 운반시설: 3년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항목은 규칙 별표 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다만, 설치검사 또는 정기·수시검사를 구분하여 일부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상 사업장내에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보관 및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

2.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다음 각 목의 취급시설별 기준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기준

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기준

다.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마.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기준

사.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아.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단서와 제4조 및 제5조의 설치 및 관리기준

자.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중 “계측결과 성적서”를 “계측결과에 관한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과, 제2항에서 정한 사전서면검사 자료 확인 및 현장에서 샘플링 또는 전수로 육안확인을 하거나 장비에 의한 측정 등 방법을 통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로”를 “시설로서”로, “받을”을 “수행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 서식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3.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4.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5.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6.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기관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 결과 검사대상 시설이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검사항목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적합으로 처리 한다.

제8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배관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배관 등의 외부도장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4.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체 없이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7.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조명 설비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제9조제1항 중 “설치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검사기관은 검사”로, “이내에 별지 제28호 및 29호 서식”을 “이내(「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만을 검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설치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검사기관은 검사”로, “별지 제28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교부받은 자가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부적합의 내용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차기 검사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제9조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설치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검사”로, “별지 제28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해당”을 “관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진단결과서를 보존하고 관할기관”을 “안전진단결과서를 보존하고 관할기관의”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 후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

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제출”을
“제출(진단기준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존 장외영향평가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
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및 1군·2
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안전진단 시
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로부터 변경된 주기를 적용한다.

④ 제3항과 같이 위험도 및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
분이 변경된 경우로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방법을 따른다.

1. 2025년 8월 6일 이전에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은 가장 높은 위험도
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
출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
보를 말한다)를 받은 시점(해당 시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안전진단 시기
는 2025년 8월 6일 이전 규정의 안전진단주기에 따른 시기를 말한
다)하고 해당 안전진단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1군·2
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
하여 적용

2. 2025년 8월 7일 이후에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은 해당 검사일을 기

준으로 변경된 주기를 적용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의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중 “구분하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설치·정기검사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별표2]과 같다”를 “구분하며,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를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험도가 높은”을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준비를”을 “각 호의 사항을 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시시킨다”를 “주시시킨다”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전진단을”을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로, “검사기관은”을 “결과 제7조의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으로, “별지 제31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7조의 검사항목이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안전진단 신청인에게 해당 결과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서와 부적합내용을 기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의 취급공정 위험성의 공정 안전 분야의 세부 내용란 (1) 중 “중화·방제”를 “중화·방제”로 하고, 같은 표 (1)의 세부 내용란 중 “용기”를 “압력·상압용기”로 하며, 같은 란 (2) 중 “비파괴검사 및”을 “비파괴검사,”로, 같은 (2) 중 “설계 및”을 “설계,”로, 같은 (2) 중 “등이”를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외관검사 분야”를 “외관검사”로 하며, 같은 란 (2) 중 “확인한다”를 “확인”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기타 분야”를 “기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업소현황]”을 “[사업장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업 소 명”을 “사업장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주) 중 “업소관련”을 “사업장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28호서식 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전의 별지 제28호서식)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3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조건부 적합의 경우”를 “조건부 적합 또는 부

적합의 경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전의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전의 별지 제31호서식) 중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안전진단보고서”를 “안전진단보고서,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의 경우 부적합의 내용을 기입한 서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과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두 개 이상의 검사를 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의 해당연도 정기검사 기준일에 맞춰 설치·운영하는 모든 시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시기(이 고시 시행 이후의 정기검사 시기와 맞추기 위해 안전진단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안전진단을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규칙 제24조제2항의 기간을 적용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두 개 이상의 검사를 받은 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중 일부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 2025년 8월 6일 이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시기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부칙 제3항에 따른 사유로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안전진단 시점을 가장 최근에 안전진단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1. 일반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번호	
시설 구분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자우편			
허 가 일			

2.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순번	물질명	CAS.no	함량 (%)	사용처	연간취급량 (톤/년) (허가증상)	최대보유량 (톤)	저장성상 (액상/고상/기상)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 검사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수

구분	개수	구분	개수
제조·사용시설		실외저장시설	
실내저장시설		실외보관시설	
실내보관시설		지하저장시설	
차량운송시설		차량운반시설	
사업장외배관이송시설	km		

4. 제조·사용시설 현황

순번	시설명 (공정명)	설치장소 (실내/실외)	연간취급량 (톤/년) (허가증상)	설치일	비고
1					
2					
3					
4					
5					

5.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현황

순번	시설명	설치장소 (실내/실외/지하)	시설용량 (m ³)	설치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6.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현황

순번	시설명	설치장소 (실내/실외)	시설용량 (m ³)	설치일	비고
1					
2					
3					
4					
5					
6					
7					
8					
9					

7. 차량 운송시설 및 설비

순번	차량번호	차대번호	운송물질	운송방식 (탱크로리 등)	탱크 사양 (재질 및 용량(m ³ , ton) 등)
1					
2					
3					
4					
5					
6					
7					
8					
9					
10					

8.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순번	차량번호	차대번호	운반물질	운반방식(화물 등)	운반용량(m ³ , ton)
1					
2					
3					
4					
5					
6					
7					
8					
9					
10					

9.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

순번	시설명	거리(km)	배관내 이송물질	비 고
1				
2				
3				
4				
5				
6				
7				

10. 설비현황

10-1.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

(공정)

연 번	구분 기호	장치 설비명	취급 물질	물질상태	압력(MPa)		온도(°C)		설계용량 (m ³)	사용재질	설계 표준	비 고
					설계	운전	설계	운전				

주) ① 제5호 제조·사용시설 현황의 공정별로 작성한다.

② 구분기호란에는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또는 공정 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에 표기된 장치 및 설비의 고유번호(Item number)를 작성한다.

③ 장치·설비명란에는 압력용기, 증류탑, 반응기, 열교환기, 저장탱크 등 고정 장치 및 설비를 기재한다. 다만, 가열로, 응축기 등의 열교환기류는 동체(Shell)와 관(Tube)으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④ 취급물질란에는 장치 및 설비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명을 작성한다.

⑤ 물질상태란에는 장비 및 설비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성상을 기재한다.

⑥ 압력, 온도란에는 장치 및 설비의 설계 및 운전 압력과 온도를 기재한다.

⑦ 설계용량란에는 장치 및 설비의 설계 총용량을 기재한다.

⑧ 사용재질란은 취급시설의 주요 부분의 재질을 재질분류기호(KS 또는 ASTM 등)로 작성한다.

⑨ 설계표준란에는 취급시설의 설계 및 제작 기준(KS, ASME, TEMA, API 등)을 작성한다.

⑩ 비고란에는 비파괴검사 및 후열처리 여부 등 기타사항을 작성한다.

10-2. 동력기계 목록 및 명세

(공정)

연 번	구분 기호	동력 기계명	취급물질	토출 압력 (MPa)	토출 온도 (°C)	토출 유량 (kg/hr)	전동기 용량 (kW)	비고

- 주) ① 유해화학물질이 취급되는 공정별로 작성한다.
- ② 구분기호란에는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또는 공정 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에 표기된 장치 및 설비의 고유번호(Item number)를 작성한다.
- ③ 동력 기계명란에는 해당 기계(펌프류, 압축기류, 송풍기류 등 동력을 사용하는 모든 기계)명을 작성한다.
- ④ 취급물질란에는 장치 및 설비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명을 작성한다.
- ⑤ 토출 압력란에는 동력기계 후단에서 토출되는 압력(MPa)를 작성한다. 다만, 해당 동력기계의 상세내용이 포함된 공정 배관·계장도(P&ID)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토출 온도란에는 동력기계 후단에서 토출되는 온도(°C)를 작성한다. 다만, 해당 동력기계의 상세내용이 포함된 공정 배관·계장도(P&ID)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⑦ 토출 유량란에는 동력기계 후단에서 토출되는 유량(kg/hr)을 각각 작성하나, 다만, 해당 동력기계의 상세내용이 포함된 공정 배관·계장도(P&ID)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⑧ 전동기 용량란에는 해당 동력기계의 전동기 정격용량(kW)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⑨ 비고란에는 펌프 및 압축기의 경우에 왕복동형 또는 원심형 등과 같은 형식과 방폭형 여부 등 기타사항을 작성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내용 및 방법,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항목 및 방법 등을 <u>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u>별표3</u>에 따른다.</p> <p>1. “<u>화학물질</u>”이라 함은 원소·<u>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u></p>	<p>제1조(목적) ----- ----- ----- <u>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u> ----- ----- <u>”검사“라 한다)의 내용·방법·절차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규칙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 정하는 것</u>----- -----.</p> <p>제2조(용어정의) ----- ----- ----- ----- <u>별표 3</u>-----.</p> <p>1. “<u>화학물질</u>”이란 「<u>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p>

2.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취급시설”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4. “저장탱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입·출하(단위공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의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말한다.

5. “화학물질설비”란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 운반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3. -----이란 -----

--.

4. “설비”란 탭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및 가열로류 등 장치류와,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등 기계류 및 배관, 계측기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5.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설비”란 화학물질설비 중 유해화학물질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6.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 시설은 제외한다)·관(튜브, 덕트 등)·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기록 등을 하는 계측·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파열판·긴급 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신 설>

7. “제조시설”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저장·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차량운송시설”이란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신 설>

7. “유해화학물질설비”란 취급 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저장, 보관 및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8. -----
--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건축물 등을 ----.

11. “보관시설”이란 -----
--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건축물 등-----
-----.

12. “차량 운송시설”이란 -----
-- 부속설비 등-----
-----.

10. “저장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유해화학물질을 단위 공장간 또는 사업장 외부로 이송 등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건축물 등을 말한다.

10. “차량운반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이란 배관, 밸브, 각종 안전장치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사업장 밖에 있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2. “사용시설”이란 제품의 제조, 제품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안전진단”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관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를 찾아내 그 제거방

13. “차량 운반시설”이란 -----
--.

14. -----
-- 말한다(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

15. “안전진단”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
--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건축물 등을 -----.

<삭 제>

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 15. (생략)

16. (생략)

1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6. · 17. (현행 제14호 및 제15호와 같음)

25. (현행 제16호와 같음)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19.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등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20.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21.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 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검사단위의 구분) ①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22.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란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3.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란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24. “사고시나리오”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사단위의 구분) ① -----

-----.

1. (생 략)
2. 실내 저장·보관시설
3. 실외 저장·보관시설
4. (생 략)
5. 차량운송·운반시설

<신 설>

6.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용시설 중 안전구역으로 구획된 하나의 설비군을 하나의 제조·사용시설 단위로 볼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단위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④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단위별로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실내·외 저장시설
3. 보관시설
4. (현행과 같음)
5. 차량 운반시설
6. 차량 운송시설
7. (현행 제6호와 같음)

- ② 제1항-----

-----.
- ③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 검사 및 안전진단 -----

-----.
- ④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사업장 단위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4항제1호의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차기 정기점검 시까지, 법 제24조제4항제2호의 학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차기 점검 시까지 받아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취급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

하지 않는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변경된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2.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 제2호 다목, 라목 및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거나, 제3호 나목, 다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3.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증가하여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 가동 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③ -----

질이 변경 또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나, 변경 또는 추가된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유해성분류정보상 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결과서는 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변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 추가된 -----

----- 유해화학물질의 -----

----- 동일한(이전 검사 시 적용되었던 기술기준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에 적용될 기술기준 등에 동등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④ -----

---- 있다.

⑤ 법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을 말하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한다.

1. 기계 및 장치에 내장(內藏)되어 정상적인 사용과정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이 없는 경우
2.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정상적인 사용과정(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중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이 없는 경우
3. 우편 또는 택배 차량으로서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견본품이 규칙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이 되지 않도록 포장된 경우

제4조의2(대표설비 검사) ① 밀폐형 공간 내 동일시설(반도체 및 표시장치 제조업종의 클린룸(Clean room: 반도체 소자나 집적 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 내 생산시설과 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을 다수 설치하려는 자가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

제4조의2(대표설비 검사) ① ----
 ----- 동일시설[반도체

 ----- 같은 업종의 가스
공급시설로 한정한다]-----

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 중 일부를 대표설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 시 해당 시설이 별표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③ (생략)

제5조(설치검사의 구분 등) ① (생략)

② 사전서면검사는 시설의 설치 계획이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현장확인검사 전에 서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현장확인검사는 서면검사결과 시설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 및 사전서면검사결과와 일치하는 지에 대하여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수 -----

이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시 해당 시설이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검사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취급시설 -----

③ -----
-- 취급시설이 기준 -----

----- 일치하는 -----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최초의 정기검사는 별지 서식 4호부터 12호까지의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다.

제6조(검사의 신청 방법) ① (생략)

②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에 관한 도면
3. 시설 설계 시에 적용한 기준의 근거 및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다음 각목의 사항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
가. ~ 다. (생략)

③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

<삭 제>

제6조(검사의 신청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취급시설-----
2. 취급시설-----
3. 취급시설 설계시-----
----- 취급시설이 -----

4. -----
-- 각 목-----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

-----.

사의 신청시기는 검사기준일(최초 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말하며,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일을 말한다. 다만, 수일에 걸쳐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매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로 한다.

<신 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검사를 받을 때는 다음 각 호의

----- 한다)로부터 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기간-----
-----.

④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 및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정기검사일(설치검사를 받은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변경된 정기검사 시기를 적용한다.

⑥ -----

사항(취급시설 변경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부분에 한한다)을 포함한 검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시설에 관한 도면 및 취급유해화학물질 정보자료

3. (생략)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취급시설-----

3.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단위공장을 보유한 경우로서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단위공장 중 최초 검사를 받은 단위공장의 해당 연도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지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⑧ 종전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으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를 정할 때에는 규칙 부칙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재통보한 취급시설의 위험도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신 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장 내 다수의 취급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지 취급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에 따라 1군 또는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다수의 검사시설을 보유하여 각 검사시설마다 정기검사 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검사시설 중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의 정기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의 정기검사 기간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주기에 따른 정기검사 시행일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위험도 및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결과 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기(직전 정기검사주기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⑩ 규칙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이내의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화 수소, 황산, 브롬화 수소 및 플루오르화 수소를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 1년
2. 유해화학물질 중 금속부식성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운송시설(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을 운송·운반하는 차량 운송시설 및 차량 운반시설: 3년

제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검사항목은 별지4호부터 27호에 따른 검사표의 검사내용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5 비고에 따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검사항목에 관한 기준은 동비고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① 검사항목은 규칙 별표 5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다만, 설치검사 또는 정기·수시검사를 구분하여 일부 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상 사업장내에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보관 및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여부
2.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다

음 각 목의 취급시설별 기준
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
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기준

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시」 별표 1, 별표 2 및 별
표 3에 따른 기술기준

다.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
른 기술기준

라.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
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술기준

마.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시」 별표 1에 따른 기술
기준

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
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

표 4,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술기준

사.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아.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
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
1항제2호단서와 제4조 및
제5조의 설치 및 관리기준

자.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

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제
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기
술기준

② (생략)

③ 검사기관은 다음 내용이 포
함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
고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은 20
년간, 정기·수시검사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서보관은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1. · 2. (생략)
3. 검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계측결과 성적서 (계측한 경우에 한한다)
4. · 5. (생략)
- ④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4호 서식
2. 실내 저장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5호 서식
3. 실내 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6호 서식
4. 실외 저장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7호 서식
5. 실외 보관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8호 서식
6. 지하 저장시설 설치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9호 서식
7. 차량 운송시설 설치검사의

-----.

1. · 2. (현행과 같음)
3. ----- 계측결과에 관한 서류 -----
4. · 5. (현행과 같음)
- ④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과, 제2항에서 정한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및 현장에서 샘플링 또는 전수로 육안확인을 하거나 장비에 의한 측정 등 방법을 통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p>검사표 : <u>별지 제10호 서식</u></p>	
<p>8. <u>차량 운반시설 설치검사의</u> <u>검사표 : 별지 제11호 서식</u></p>	<p><u><삭 제></u></p>
<p>9. <u>배관이송시설 설치검사의 검</u> <u>사표 : 별지 제12호 서식</u></p>	<p><u><삭 제></u></p>
<p>10. <u>제조·사용시설 정기·수시</u> <u>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3호</u> <u>서식</u></p>	<p><u><삭 제></u></p>
<p>11. <u>실내 저장시설 정기·수시</u> <u>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4호</u> <u>서식</u></p>	<p><u><삭 제></u></p>
<p>12. <u>실내 보관시설 정기·수시</u> <u>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5호</u> <u>서식</u></p>	<p><u><삭 제></u></p>
<p>13. <u>실외 저장시설 정기·수시</u> <u>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6호</u> <u>서식</u></p>	<p><u><삭 제></u></p>
<p>14. <u>실외 보관시설 정기·수시</u> <u>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7호</u> <u>서식</u></p>	<p><u><삭 제></u></p>
<p>15. <u>지하 저장시설 정기·수시</u> <u>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8호</u> <u>서식</u></p>	<p><u><삭 제></u></p>
<p>16. <u>차량 운송시설 정기·수시</u> <u>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19호</u> <u>서식</u></p>	<p><u><삭 제></u></p>

17. 차량 운반시설 정기·수시
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0호
서식

18. 배관이송시설 정기·수시검
사의 검사표 : 별지 제21호 서
식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
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
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정기
·수시검사를 받거나, 2015년 1
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
해화학물질을 지정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시설로 설치
검사 이전에 정기·수시검사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수
행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시설 설치·정기
·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2호 서식

2. 실내 저장·보관시설 설치·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
지 제23호 서식

3. 실외 저장·보관시설 설치·

<삭 제>

<삭 제>

⑤ -----

----- 시설로서 -----

수행할 -----

-----.

1.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 서식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
지 제3호서식

3.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

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4호 서식

4. 지하 저장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5호 서식

5. 차량 운송·운반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6호 서식

6. 배관이송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검사표 : 별지 제27호 서식

⑥ (생략)

제8조(경미한 사항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에 적합한 경우 적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4.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5.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6.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경미한 사항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검사기관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 결과 검사대상 시설이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검사항목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적합으로 처리 한다. ----

1.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배관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배관 등의 외부도장 관리상

<신 설>

<신 설>

<신 설>

가.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배관 등에 유해화학물질
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
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배관 등의 외부도장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라.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
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
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
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태가 미흡한 경우

4.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을
설치하여 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기준을 위반
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
벽, 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
체 없이 배출하지 아니한 경
우

6.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마.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체 없이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바.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사.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조명 설비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신 설>

제9조(검사결과 처리) ① 설치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 및 29호 서식에 의한 검사결과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설치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검사항목 부적합에 따른 조건부

<삭 제>

<삭 제>

<삭 제>

7.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조명 설비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제9조(검사결과 처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

----- 이내(「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만을 검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② 검사기관은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 설>

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운영자는 검사 및 진단결과서
를 보존하고 관할기관 요청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진단의 신청 방법) ①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진단신
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이 화학사
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이전에
취급시설의 위험도가 변경된 경
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1. 변경 이전 위험도에 따른 진

⑤ 제4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부적합한 사항을 개
선한 후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적합 항
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
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⑥ -----
----- 안전진단결
과서를 보존하고 관할기관의 -
-----.

제11조(안전진단의 신청 방법) ①

별지 제6호서식-----
----- 제출(진단기
준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존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
여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
험도 및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

단주기와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 중 먼저 도래하는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

2. 제1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부터는 변경된 위험도에 따른 진단주기에 안전진단을 실시

④ 기존 장외영향평가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기존에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가 변경되는 경우의 안전진단 시행주기는 직전 안전진단일(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정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

전 안전진단일로부터 변경된 주기를 적용한다.

④ 제3항과 같이 위험도 및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구분이 변경된 경우로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방법을 따른다.

1. 2025년 8월 6일 이전에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은 가장 높은 위험도의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말한다)를 받은 시점(해당 시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앞선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안전진단 시기는 2025년

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
년도의 다음 연도의 그 다음 연
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안전진
단을 실시해야 한다.

<신 설>

제13조(안전진단 기본항목) 안전
진단의 기본항목은 안전진단 대
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
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8월 6일 이전 규정의 안전진
단주기에 따른 시기를 말한
다)하고 해당 안전진단일로부
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상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

2. 2025년 8월 7일 이후에 최초
검사를 받은 시설은 해당 검
사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주기
를 적용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
된 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시행
일이 이미 경과했거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
음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승인년도의 다음 연도의 그 다
음 연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안
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안전진단 기본항목) ----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하
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
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
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설치·정
기검사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
으며, 세부내역은 [별표2]과 같
다.

제14조(안전진단 선택항목) ① 안
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결과 사고시나리오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
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
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
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
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
상 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
에 대해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구분하
며,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안전진단 선택항목) ① --

----- 따라 적합통보를 받
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② -----

-----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되는 -----

1호 서식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 별지 제7호서식----

② 검사기관은 제7조의 검사항목이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안전진단 신청인에게 해당 결과를 교부할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서와 부적합내용을 기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
----- 2026년 1월 1일 -----

